

## 기간제근로자(국책과제) 직원 공개채용 공고

기간제근로자(국책과제) 직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3. 16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### I.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등

- 채용직종 : 기간제근로자(계약직)
- 채용분야 및 인원 등

| 채용분야     | 직위    | 채용<br>인원 | 채용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수자원연구    | 선임연구원 | 1명       | 채용일 ~ 2020.02.28.<br>(연구기간 : ~ 2020.02.28.) |    |
| 연구과제관리   | 연구원   | 1명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지역맥주연구개발 | 사원    | 1명       | 채용일 ~ 2017.07.31.<br>(연구기간 : ~ 2018.07.31.) |    |
| 회계       | 사원    | 1명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- ※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
- ※ 각 분야별 사업 평가 시 ‘기간 연장’ 또는 ‘조기종료’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채용
- ※ 지역맥주연구개발, 회계 분야의 경우 연도별 사업 평가 통과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

### ○ 자격 요건

#### < 공통 자격 >

- 2017년 4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
- 우리공사 인재상에 부합되는 자 (인성 / 창조성 / 전문성 / Globality)
-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- 군필자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  - 군복무중인 자는 2017. 4월 1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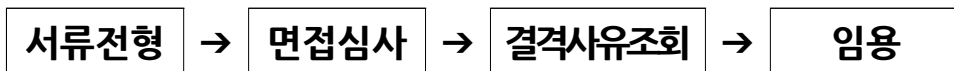
## < 분야별 자격요건 >

| 채용 분야     |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| 분야별 자격요건<br>(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)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자원 연구    | 다심도 관측정 개발 및 테스트베드 운영 등 | · 석사학위 취득 후 수자원 관련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자                     |
| 연구과제 관리   |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및 진도관리 등   | · 자연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(예정)자<br>※ 통계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취득(예정)자 우대 |
| 지역맥주 연구개발 | 특화맥아 및 밀맥아 개발           | · 자연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(예정)자<br>· 맥주분야 제조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자    |
| 회계        | 회계관리 및 정산업무             | · 경상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(예정)자<br>· 회계분야 경력 1년 이상자            |

## II. 공고기간 및 원서접수

- 공고기간 : 2017. 03. 16 ~ 03. 27 18:00까지
- 접수기간 : 2017. 03. 20 ~ 03. 27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([www.jpdc.co.kr](http://www.jpdc.co.kr)) 접수

## III. 전형절차



### ○ 전형별 합격자 선정 기준

- 서류전형 : 적 · 부 판정
- 면접전형 :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
- 최종 면접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우선 선발

## VI. 제출서류

-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,  
사진 파일(jpg, png, tif 등) 형태로 등록
- 우리 공사는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, 서류 제출 시  
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

○ 제출서류

【공통 제출서류】

- ① 입사지원서 / 자기소개서 (채용 홈페이지 내 작성)
-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(채용 홈페이지 내 동의)
-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
- ④ 주민등록 초본 (남성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)

【추가 제출 (해당자에 한함)】

〈 수자원 연구 분야 지원자 필수 제출 〉

- ⑤ 직무수행계획서 (채용 홈페이지 내 작성)
- ⑥ 연구개발 수행실적 (최근 5년 간 프로젝트 수행 경력, 채용 홈페이지 내 작성)
- ⑦ 프로젝트 수행실적 증빙자료 (원본대조필 - 면접 시 제출)
- ⑧ 연구실적
  - 연구실적물 목록 (최근 5년 간, 채용 홈페이지 내 작성)
  - 개별 연구실적물 요지 (석사학위 논문 및 학술 연구논문 등, 채용 홈페이지 내 작성)
  - 연구실적물 증빙자료(최종 학위논문, 학술연구논문 별쇄본 등 - 면접 시 제출)
- ⑨ 경력증명서 /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(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) 〈수자원연구 분야 필수〉
  - ※ 경력증명서 근무기간과 국민연금(건강보험) 가입증명서의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국민연금(건강보험) 가입증명서상의 근무기간을 적용  
(단, 공사 전력 조회 결과 경력기간 등 입증 가능 시 경력 인정 가능)
- ⑩ 자격증 사본 / 어학 성적표
  - ※ 모든 자격은 공고일까지 취득분에 한하며, 어학 성적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획득한 점수에 한함
- ⑪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 사본
  - ※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(지방보훈지청) 발급분에 한함. (공고일 이전 발행분 및 국가유공자증 등록자의 경우 보훈자녀 전형 지원 불가 및 가점 미부여)
- ⑫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확인서

○ 모든 서류 원본은 면접 심사 당일 제출 (채용 홈페이지 내 작성 자료 제외)

○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후 기재사항 및 자격증 등이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면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되며, 공사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한 날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 모든 분야 응시제한

## V. 기타 유의사항

-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,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접수 시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접수번호가 송부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지원서 기재 착오·누락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- 모집기간 내 1개의 분야만 지원 가능 (이중 지원시 합격 취소)
- 근무지는 제주도 지역이며, 입사 후 제주 지역 거주가 가능하여야 함.
- 임용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,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해당 분야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순으로 임용여부 결정 가능
-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청시 반환하며,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함
-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“채용문의”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(☎ 064-780-3800)으로 문의

※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인재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.

## VI. 전형일정

| 구분        | 일정            | 비고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채용공고      | 3. 16 ~ 3. 27 | 온라인 |
| 원서접수      | 3. 20 ~ 3. 27 |     |
| 면접심사      | 3. 30 (예정)    |     |
| 합격 예정자 발표 | 3. 31 (예정)    |     |

※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(결격사유)

1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